

대전광역시 재활용센터 운영의 난맥상

지난 1999년 3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자가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은 후 최근까지 지역 내 건설폐기물처리시장을 독점해온 대전광역시 건설폐재파쇄장의 무허가처리업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내용인 즉, 대전광역시는 그간 건설폐재파쇄장의 불법 영업행위와 처리시설의 편법운영에 대한 협회와 지역 처리업체들의 절기찬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노력은 커녕 오히려 처리대상폐기물을 확대하고 시설의 성격을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여 불법·편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만 일삼아 왔다.

이에 한국건설자원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지난 2월 6일 그 동안 지도단속을 통해 확보한 건설폐재파쇄장의 처리대상의 폐기물 불법반입처리행위, 중간처리 기준 위반 및 불법 재활용행위, 폐토사 불법재활용 행위 등 건설폐재파쇄장의 편법·불법 운영행위와 공공기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 승인대상 외 폐기물 반입·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 행위 일삼아

- 협회, 대전지방 검찰청에 고발 및 재활용센터 폐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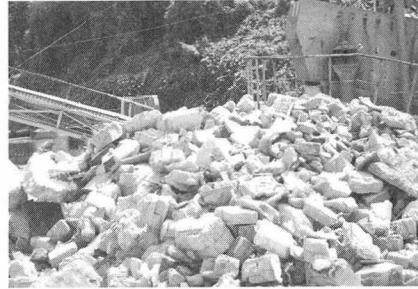
이러한 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그 동안 대전광역시 건설폐재파쇄장의 불법·편법을 통한 독점적·시장지배적 영업행위로 인해 이 지역 민간처리 시장은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주요 실태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는 관내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형식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도 실제로는 관내 소재한 67개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건설폐재파쇄장과 반입계약서를 체결한 후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건설폐재파쇄장이 폐기물을 수탁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해 왔으며, 특히 이 같은 방법으로 민간시장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 내에서 독점적이고 시장지배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 왔다.

게다가 대전광역시는 반입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민간처리시장에서는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5,500원에 폐기물을 수탁처리 함으로써 민간처리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봉쇄해 왔다.



·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폐토석



· 처리대상의 폐기물인 '폐벽돌'이 반입되어 있는 모습

지난 2006년 7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대전서남부 택지개발사업발생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건설폐재파쇄장은 대한주택공사가 배출하는 폐콘크리트류 약 10여만톤을 톤당 5,500원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영업행위를 하여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폐콘크리트를 5,500원에 덤핑받도록 하였으며, 결국 동 파쇄장과 반입계약을 체결한 수집운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수탁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와 대전충남지회에서는 약 2년여에 걸쳐 대전광역시 건설폐재파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대전광역시는 지방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시정노력 없이 동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

이에 협회는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폐재파쇄장의 불법 운영실태를 고발하고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는 동 시설의 폐쇄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협회는 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참고인진술 및 대질심문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청 조사에 의하면 건설폐재파쇄장의 처리대상의 폐기물 처리행위와 처리기준을 위반한 재활용행위에 대한 수사는 의도했던 대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검찰청의 조사에 따른 기소 여부 등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전광역시 건설폐재파쇄장에 대한 추가 고발 등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표 기자(wplee@hanmail.net)